

서울동부지방법원 2021. 1. 22 선고 2019가단152037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유한회사 A

피 고 B

변론 종결 2020. 12. 11

판결 선고 2021. 1. 22

주 문

1.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1. 피고는 보관중인 별지 목록 기재 C 주식회사의 제품을 C 주식회사 소재지로 이전하라.
2. 피고는 원고에게 4,403,2000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

민사소송에 있어서 청구의 취지는 그 내용 및 범위가 명확히 알아볼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고,이의 특정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라고 할 것이므로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은 피고의 이의 여부에 불구하고 직권으로 그 보정을명하고,이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(대법원 1981. 9. 8. 선고 80다2904 판결, 대법원 2008. 10. 9. 선고 2007다5069 판결 등 참조).

원고는,자신이 c 주식회사에 대하여 채권을 갖고 있는데 c 주식회사가 강제집행을면하기 위하여 C 주식회사의 책임자산인 건강기능식품을 피고에게 인도한 후 피고가이를 판매하고 있으므로,피고는 위 건강기능식품을 c 주식회사· 소재지에 점유를 이전하고, 이미 판매한 상품에 대하여는 가액배상으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돈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.

그러나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취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는 '채무자가 한 법률행위'이어야 하는데,원고가 구하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에 의하여 이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없다.

나아가 이 사건 제1회 변론기일에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의 변경을 촉구하였음에도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제2회 변론기일에 불출석한 후 2020. 7.15. 소취하서를 제출한 사실, 피고가 이에 부동의하여 이 사건 소가 계속되었음에도 원고가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제3, 4회 변론기일에 불출석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, 이 사건 소는 그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아니하여 각하한다.

2. 결론

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.

판사 조실

별지